#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76

발의연월일: 2021. 3. 24.

발 의 자:서범수·김희곤·전봉민

최형두 · 엄태영 · 박수영

임이자 · 조해진 · 권성동

권영세 · 윤주경 · 이용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도농복합형 시와 일부 군의 경우 그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행정구역 내 농어가의 보험료까지 재해가 발생한 구역의 농어가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단위 또는 권역 단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보험 료율 산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자치구. 다만,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 대 하여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경우에는 동 단위로,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 단위로 보험료율 을 산정할 수 있고, 군의 경우에도 읍·면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산정의 행정구역 단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8조제2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 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 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 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 -----다음 각 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 <신 설> 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다만, 「지방 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 대하여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경우에는 동 단위로,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 • 면 단위로 보험료율 을 산정할 수 있고, 군의 경 우에도 읍 • 면 단위로 산정할

<u>&lt;신 설&gt;</u>	<u>수 있다.</u>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
	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